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101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김형욱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2.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485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의료법인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79,02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06. 9. 6. 체결,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9. 5.2) 2009. 2. 5. 체결, 보증금액 285,000,000원(이후 255,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2. 4.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 B이 2012. 2. 2.경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2.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59,697,921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B의 회생절차 등

B은 2012. 10. 16. 창원지방법원에 회생(2012회단43)을 신청하였고,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13. 7. 22.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3. 8.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 합계 565,338,072원(= 원금 559,697,921원 + 이자 5,060,281원 + 대지급금 278,070원 + 미수위약금 301,800원)을 신고하였고, B의 처제인 피고도 차입금 439,600,000원(= 원금 430,000,000원 + 이자 9,6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B은

위 각 채권을 전액 시인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공정증서, 전부명령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대여금 430,000,000원 중 미변제 원금 420,0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5차1207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26. ‘채무자(B)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5. 12. 16. B에게 송달되었고, 2015.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3. 12. B과 사이에 ‘채무자(B)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채무(340,300,000원, 위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한 원금 채무금임)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자는 이 건 채무를 2018. 3. 15.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9년 제48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 B를 채무자, 의료법인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급료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40,3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9타채10561,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3. 25. 의료법인 D에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3채무자인 의료법인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경 및 2020. 1.경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에는 집행권원이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485호 채무변제계약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받은 2019. 5.경 또는 2020. 1.경 무렵에는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미 B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폐지되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받은 2019. 5.경 또는 2020. 1.경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21. 4. 19. 제기되어 부적법하다1).

나. 구체적 판단

-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5.경 또는 2020. 1.경 의료법인 D로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의료법인 D의 재무팀 팀장인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 이 법원의 의료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법인 D이 2019. 5.경 또는 202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B이 피고의 형부이자 의료법인 D의 진료원장으로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법인 D은 원고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요청을 받아 2019. 5.경, 2020. 1.경과 2021.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반복하여 의료법인 D에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설령 원고가 2019. 5.경 또는 2020. 1.경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받아 그 무렵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B의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로 무자력인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급료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와 B 사이에 처음부터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약정 및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피고와 B이 통모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급료채권을 은닉하고 빼돌리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이다.

한편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은 B이 이 사건 급료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다.

B은 무자력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급료채권 중 잔존 부분인 61,271,762원[= 압류 및 전부 대상 340,300,000원 - 279,028,238원(일부 수령)]에 대하여는 이를 B에게 양도하고 의료법인 D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의료법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 279,028,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부인 B이 병원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간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2004. 9. 16. 150,000,000원, 2004. 12. 13. 150,000,000원, 2005. 5. 20. 130,000,000원을 실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다. B은 단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채무액을 확정짓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B이 피고와 통모하여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급료채권을 일반채권자로부터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지위가 더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의 무자력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9. 3. 12.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B이 2019. 3.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와 피고 사이에는 B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을 340,300,000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2)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가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와 B이 처제와 형부의 관계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점, B이 병원 운영에 실패한 이후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전액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급료채권을 전부받은 것은 결국 채무자인 B이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급료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과거 운영하던 병원이 실패하여 이 사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료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피고는 B의 처제로서 B과 금전 거래를 하여 왔던 점, 피고가 B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신고한 점,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공정증서, 전부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13. 8.경 B의 딸인 F으로부터 ‘B을 대신하여 F이 2033년까지 20년 동안 이자로 월 2,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할 테니, 그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원금을 탕감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한다(피고의 2021. 11. 10.자 준비서면 6쪽). 그리고 피고는 2013. 8.경부터 2021. 4.경까지 F 명의로 대체로 월 2,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왔다. 그렇다면 F과 위 합의에 따라 월 2,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던 피고가 2019. 3. 12. 다시 B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전부명령까지 신청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B의 급료를 거의 대부분 F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였는데(을 제7호증),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와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B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강제집행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F으로부터 월 2,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B의 급료를 전부받아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가 최초 F으로부터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할 당시 이미 B의 급료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와 같은 합의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④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B의 급료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온 사정(을 제4호증)을 고려하면, B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급료채권을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마저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의료법인 D으로부터 279,028,2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아직 지급받지 않은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을 양도하고, 의료법인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받은 위 279,02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현, 판사 김도완, 판사 김동민

별지

1. 가. 계약체결일 : 2019. 3. 12.

나. 금액 : 340,300,000원

다. 채무의 종류 : 차용금

라. 채권자 : A

마. 채무자 : B

2.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타채1056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
부받은 의료법인 D에 대한 청구금액 340,300,000원의 금료 및 상여금 채권 중 61,2
71,762원 부분. 끝.

1) 피고는 2021. 11. 10.자 준비서면(7쪽)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타채1098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기록열람신청을 한 2019. 5. 31.경 제3채무자인 의료법인 D이 제출한 진술서와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열람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2. 7.자 준비서면(3쪽)에서 명시적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원고가 2019. 5.경 내지 2020. 1.경 팩스를 통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21. 11. 10.자 준비서면에서 기재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